

# 언론진흥기금 위험관리기준

2010. 11. 28 개정

2015. 5. 12 개정

2018. 11. 20 개정

##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언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업무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원칙)** 기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이라 함은 기금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말한다.
2. “위험관리”라 함은 자산 관리와 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인식, 측정, 감시, 통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43. “재무위험”이라 함은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써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을 말한다.

**가. 유동성위험** : 자금 수입계획상의 차질, 보유 금융상품의 환매 지연 등에 따른 유동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지급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나. 신용위험** :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다. 시장위험** : 금리·환율·주가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

4. “운영위험”이라 함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될 비재무적~~위험~~ 위험을 말

한다.

5. “VaR(Value at Risk)” 라 함은 시장위험의 측정지표로서 실적형 금융상품에서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표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을 말한다.
6. “기준지수” 라 함은 자산군별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장의 대표지수를 말한다.
7. “수익증권”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8.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 4조(위험관리 대상)** 위험관리 대상은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으로 한다.

**제 5조(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위험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적·종합적·독립적으로 관리한다.
2.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특정부문에 위험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킨다.
4. 과도한 위험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 6조(위험관리의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자산운용지침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며, 위험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되 자산 변동 및 시장위험 현황 등 위험관리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위기상황에 관한 위험판단지표 및 손실가능성에 따른 대응절차는 [별표1]과 같다.

## 제 2장 위험관리 절차

**제 7조(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위험인식 :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 및 분석한다.
2. 위험측정 : 위험측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위험측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다.

나.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은 측정방법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다. 위험측정 방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위험한도 설정 : 위험한도 설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험 총 한도 및 위험 유형별 한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가. 기금의 자산운용전략, 사업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

나. 자산운용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환경의 변화

4. 위험 모니터링 : 위험관리 책임자는 시장변화에 따른 위험 규모의 변동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험부담량이 위험한도 대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5. 위험보고 : 위험관리 책임자는 위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일관성 및 적시성을 유지하여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3장 유동성 위험의 관리

제 8조(관리대상)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은 기금의 조달 및 운용자금으로 한다.

제 9조(측정방법) 유동성위험은 CaR(Cashflow at Risk)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로 측정한다.

1. 과거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을 감안하여 월, 분기, 연간 단위로 95% 신뢰 수준의 CaR(Cashflow at Risk)로 측정한다.

2. 모니터링 지표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측정하여 활용한다.

제 10조(관리방법)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연간자금운용계획 및 월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최저 유동자금 보유한도를 조정하여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1. 연간 및 월간 현금과부족 규모와 추이

2. 금융투자상품의 만기구조

3. 위기관리대책에 의한 유사시 자금조달 능력

또한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별표2]에 정한 유동성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제 11조(측정주기) 유동성위험은 매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장 신용위험의 관리

제 12조(관리대상) 신용위험 관리대상은 현금 및 예치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예치금 제외),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13조(측정방법) 신용위험은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측정한다.

제 14조(관리방법) 신용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운용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한다.
2. 발행 및 거래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운용한도를 관리한다.
3.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상품, 운용비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운용상품이나 거래종목의 신용도,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 지정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5.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CP의 경우 A2-이상인 종목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별표2]에 정한 신용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제 15조(측정주기) 신용위험은 매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장 시장위험의 관리

제 16조(관리대상) 시장위험의 관리대상은 금리, 환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시 영향을 받는 시장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금리 상품은 제외한

다.

**제 17조(측정방법)** 시장위험은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시장위험에 노출된 투자상품의 시장위험(Market VaR)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위험 측정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8조(관리방법)** 시장위험의 측정은 시장위험(Market VaR)으로 측정하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관리한다.

1. 허용위험한도 준수여부
2.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시장동향 파악, 분석
3. 시장위험 발생 또는 발생 예상시 해당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금액의 조정, 투자상품의 매도나 환매 등 필요 조치

또한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별표2]에 정한 시장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제 19조(측정주기)** 시장위험은 매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장 운영위험의 관리

**제 20조(관리대상)** 운영위험 관리대상은 외적인 환경변화와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의 업무오류 및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위험 등으로 한다.

**제 21조 (측정방법)** 운영위험 측정은 [별표3]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제 22조(관리방법)** 운영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확히 정의된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2.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 통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정기적인 내부점검을 통하여 운영위험을 관리한다.

또한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별표2]에 정한 운영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제 23조 (측정주기)** 운영위험 관리부서는 분기별로 위험을 측정하며, 연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1]

< 위기상황 사전 판단지표와 단계별 대응절차 >

| 구분       |                                    | 위기 1단계  | 위기 2단계  |
|----------|------------------------------------|---|---|
| 신용<br>위험 | 금리<br>스프레드 <sup>1)</sup>           | 최근10영업일 평균<br>대비 100bp이상 확대   | 최근10영업일 평균<br>대비 200bp이상 확대   |
| 시장<br>위험 | ① 주가<br>(코스피)                      | 최근10영업일 이전<br>대비 20%이상 하락   | 최근10영업일 이전<br>대비 25 30%이상 하락  |
|          | ② 금리 <sup>2)</sup><br>(국고채<br>3년물) | 최근10영업일 이전<br>대비 50bp이상 상승  | 최근10영업일 이전<br>대비75 100bp이상 상승   |
| 대응조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의 발생원인, 지속가능성 검토</li> <li>•보유 포트폴리오 점검 및 조정 가능여부 검토</li> <li>•전술적 자산배분 및 월별 자금운용계획 수정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동성 위험 관리 최우선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방침 및 향후 운용전략을 검토</li> <li>•전략적 자산배분안 조정 검토 및 신규투자 금지</li> </ul> |
| 관리주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부서 검토 및 기금담당이사 보고</li> <li>•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긴급시 선조치 후 보고 가능)</li> </ul>  |

1) 스프레드 :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AA-, 3년물)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분 제외

**< 유형별 위험 관리방법 및 대응 조치 >**

| 구분     |       | 정상단계                                     | 주의단계  | 경고단계  |
|--------|-------|--|---|---|
| 유동성 위험 | 판단 지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0% 이상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0% 미만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80% 미만   |
|        |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분기현황보고                     | •경영기획실장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신규투자 금지(MMF 제외)<br>•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심의                           |
| 신용 위험  | 판단 지표 | •예치대상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br>•보유 채권, CP 신용등급 유지 |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최근 6개월이내 신용등급 1단계 하락<br>•보유 채권, CP 최근 6개월 이내 2단계 등급 하락하였으나 투자대상자산에 속하는 경우 |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최근 6개월이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br>•보유 채권, CP 등급 하락하여 투자 제외 자산에 속하는 경우 |
|        | 대응 조치 | •신용상태 수시점검<br>•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분기현황보고       | •해당 금융기관, 채권, CP 신규투자 금지<br>•경영기획실장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하여 상품해지 등 필요 방안 마련 및 조치<br>•자산운용위원회에 조치결과 보고             |
| 시장 위험  | 판단 지표 | •VaR한도 소진율 90%이하                         | •VaR한도 소진율 90%초과 100%이하   | •VaR한도 소진율 100%초과   |
|        |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분기현황보고                     | •시장상황 검토 및 한도소진 원인 분석자료 보고  | •투자상품 조정 등 관련조치 시행 검토   |
| 운영 위험  | 판단 지표 |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부적절 항목이 3개 이하일 경우            | •정기, 수시 감사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부적절 항목이 3개를 초과할 경우                                | •정기, 수시 감사결과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부적절 항목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        | 대응 조치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분기현황보고                      | •원인파악 및 계통보고<br>•관계자 주의통보   |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하여 필요방안 마련 및 조치<br>•자산운용위원회에 조치결과 보고                     |

[별표 3]

< 운영위험 체크리스트 >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
|                       |   | 적절   | 부적절 |
|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 기금수탁관리자 윤리규정 및 직무행위규범 구비여부                  |      |     |
|                       | 자산운용담당자 윤리서약 여부                             |      |     |
| 잔액대사(잔고증명서)           | 기말 시스템 잔고 및 잔고증명서 대사                        |      |     |
| 통장보관 및 관리             | 운용 중인 상품의 통장 또는 보관증 구비 여부                   |      |     |
|                       | 통장 또는 보관증 인감 날인 확인                          |      |     |
| 인감보관 및 관리             | 기금관리부서장 인감 구비 여부                            |      |     |
|                       | 사용인감(기금지출원인/기금관리팀장 인감) 격리 보관 여부             |      |     |
| 보안관리                  | 보안카드 출입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     |
|                       | 사무실 보안점검표 관리상태                              |      |     |
|                       |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 여부                              |      |     |
|                       | 시스템(컴퓨터 부팅, 윈도우) 비밀번호 변경                    |      |     |
| 규정에 따른<br>편입가능자산 운용   | 자본시장통합법 상 ‘증권’ 해당여부                         |      |     |
|                       | 신용평가등급 준수 여부                                |      |     |
|                       | 단기 MMT·MMW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준수 여부                 |      |     |
|                       |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른 네거티브리스트 해당 여부  |      |     |
| 물적손해 보험가입             | 손해보험 가입 여부                                  |      |     |
| 업무마비 및 시스템 장애 대비      | 시스템 장애시 노트북무선망 등 백업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      |     |
| 운용 및 회수시<br>위임전결규정 준수 | 지출원인행위서 전결사항 준수 여부                          |      |     |
|                       | 지출한도 설정 전결사항 준수 여부                          |      |     |
|                       | 수입결의서 전결사항 준수 여부                            |      |     |
|                       | 이자수입결의서 전결사항 준수 여부                          |      |     |
| 운용상품 계약서 등<br>서류구비    | 연기금 투자플 MMF 거래전표 구비 여부                      |      |     |
|                       | 정기예금, CD, MMW, MMT 등 상품운용 계약체결 완료 및 서류구비 여부 |      |     |
|                       | 정기예금, CD, MMW, MMT 등 상품 수익금계산서 구비 여부        |      |     |

점검의견

분량 초과시 별지작성 가능